

「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남진삼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4. 12.
- 회부일자 : 2024. 4. 16.
- 상정일자 : 2024. 4. 16.

2. 제안이유

- 관내 장애인의 일상생활, 직업생활 및 여가·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 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전문기관 실태조사 및 컨설팅 의뢰(안 제5조)
-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(안 제6조)
-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(안 제7조)
- 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 설치·운영(안 제8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평생교육법」 제5조에서 ‘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’고 규정하고 있고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0조에서 ‘지자체는 장애인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’고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우리 군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6조(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)에서 관내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고,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7조(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)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회 제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.

- 안 제8조(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 설치·운영)에서 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, 조건에 따라 ‘평창군 평생교육협의회’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.

※ 지방자치법 제130조¹⁾에 근거하여 가능한 사안임.

5. 종합검토의견

- 상위법에서 장애인의 교육 권리 실현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고,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.

1) 「지방자치법」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